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5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이해식 · 이수진 · 최혁진
양부남 · 김영진 · 김교홍
홍기원 · 한민수 · 박정현
윤준병 · 김원이 · 위성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
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
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차</u> <u>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u> <u>련하고, 언론·교육기관 등과 협</u> <u>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u> <u>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u> <u>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u> <u>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u> <u>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u> <u>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6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u> <u>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u> <u>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u> <u>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u> <u>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u> <u>“2차 가해”라 한다)를 한 자는 5</u> <u>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u>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u> <u>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u> <u>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u>

	<u>른 정보통신망의 이용</u> <u>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u> <u>게시 또는 상영</u> <u>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u> <u>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u> <u>두연설 등에서의 발언</u> <u>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u> <u>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u> <u>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u> <u>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u> <u>한다.</u>
--	--